

의안번호	제 279 호
의 결 연 월 일	2012년 1월 일 (제 306 회)

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

발의자	정지숙 의원외 6명
발의연월일	2012년 1월 3일

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
(정지숙의원 대표발의)

의
번
안
호

발의연월일 : 2012년 1월 3일
발 의 자 : 정지숙, 최병윤, 김영주
김양희, 박종성, 유완백
이수완

제정이유

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함.

주요내용

- 가. 충청북도지사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발굴,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발굴·지원 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3조).
 - 나. 도지사는 병역명문가가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할 때에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제1항).
 - 다. 도지사는 병역명문가가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의거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50%를 감면하도록 함(안 제5조제2항).
 - 라. 도지사는 병역명문가가 청남대 등 도산하기관 시설에 입장할 때에 입장료를 면제해 주도록 함(안 제5조제3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.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협의함.
- 나. 예산조치 : 없음
- 다. 기 타
 - (1) 입법예고 : 2011.12.13. ~ 2012.1.2.
의견없음.
 - (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“병역명문가”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.
- “3대 이상 가족”이란 조부 및 부·백부·숙부 그리고 본인,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(사망한 사람 포함)를 말한다.

제3조(병역명문가 지원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북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제4조(홍보 및 예우)
① 도지사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- 제5조(우대)
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.
② 도지사는 병역명문가가 도가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해 줄 수 있다.

- ③ 도지사는 병역명문가가 청남대 등 도 산하기관 시설을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.
- ④ 병역명문가로서 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 법령 발췌

지방자치법

제15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